

[자율기구] 민자·개발사업추진단 운영 성과보고서

1. 운영 개요

- 설치 근거: 법무부훈령 제1621호 「자율기구 “민자·개발사업추진단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정('26. 7. 1.)
- 설치 목적: 교정시설 과밀수용 조기 해소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및 개발사업 추진
- 운영 기간: '26. 7. 1. ~ '26. 12. 31.(6개월) ※ 추후 연장 예정

2. 주요 업무

- 교정시설 신축·이전 관련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
- 교정시설 위탁개발 등 개발사업 추진 및 유희 부지 활용에 관한 사항
- 민자·개발사업 관련 관계기관 협의·조정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
-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교정시설 확충 및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
3. 업무 추진 방향

-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교정시설 확충 기반 마련
 - 교정시설 신축·이전에 민간투자(BTL) 방식을 도입하여 재정 부담을 분산하고 과밀수용 해소 시기 단축

-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·기준을 정비하여 후속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모델 마련
- 사업 타당성 검토부터 협약 체결까지 단계별 추진 체계를 확립하여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 제고

□ 위탁개발 등 개발사업 활성화 및 관계기관 협력 강화

- 교정시설 이전과 연계한 위탁개발로 종전 부지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상생 도모
- 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 동력 확보
- 관계부처와 사업 방식·재원 조달 방안 등을 사전 협의하여 행정 절차 지연 최소화

□ 민간 참여 교정시설의 운영 기준 및 제도 정비

- 보안 경계를 기준으로 국가와 민간의 운영·관리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교정시설 보안성 유지
- 성과 기반 관리체계 도입 및 관련 훈령·규정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 구축
- 시설 유지관리·부대업무 등 민간이 맡는 업무의 범위와 책임 기준을 구체화하여 운영 공백 방지
- 운영 단계 점검·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민간 운영 서비스의 품질 지속적 관리

□ 현장 의견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 교정시설 조성

- 교정 실무자가 참여하는 설계 TF를 운영하여 현장 소요를 설계

단계부터 반영

- 개정 「법무시설 기준규칙」을 반영하여 수용자의 수용 환경 및 직원의 처우 개선
- 기존 교정시설 현장 의견 수렴을 정례화하여 보안·동선·수용 관리 등 운영상 개선 사항을 설계에 반영. 끝.